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2273 제출연월일: 2024. 7. 26.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산업단지에 기존의 공장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4항 본문 중 "제34조"를 "제33조"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제32조"를 "제32조, 제33조, 제36조"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의5제3항 중 "제34조"를 "제33조"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제34조"를 "제33조"로 한다.

제39조의10제1항 전단 중 "제34조"를 "제33조"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마목 중 "제33조제1항"을 "제33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치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따라 존치하게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제8조의3제4항, 제31조, 제38조의5제3항,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 이 법 시행 전에 제17조·제17조의2 및 제19조의2(제31조 및 제3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승인·변경승인 및 고시된 국가단지실시계획 등
- 2.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 및 제19조의2(제8조의3제4항, 제31조 및 제38조의5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승인· 변경승인 및 고시된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등
- 3.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의2 및 제19조의2(제8조의3제4항, 제31조 및 제38조의5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승 인 · 변경승인 및 고시된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등
- 4. 이 법 시행 전에 제19조 및 제19조의2(제31조 및 제38조의5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승인·변경승인 및 고시된 농공단지실시계획 등
- 5. 이 법 시행 전에 제39조의7에 따라 승인·변경승인 및 고시된 재 생시행계획
- 6. 이 법 시행 전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 법」에 따라 수립(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승인(변경승인을 포 함한다) 및 고시된 산업단지계획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이 이 법 시행 이후 변경승인되거나 수립이 변경되어 고시된 경우 그 변경된 계획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0항제2호나목 중 "제33조제1항"을 "제33조"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①	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준산업단지에 관하여는 제5	4
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	
의4까지, 제10조부터 제13조까	
지,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	
부터 <u>제34조</u> 까지, 제36조부터	<u>제33조</u>
제38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	
48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다	
만, 제12조는 준산업단지지정권	
자가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	
시한 지역에만 준용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	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
한 준용) 산업단지의 인근 지역	한 준용)
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도로·용수공급	
시설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	
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	
여는 제12조, 제17조, 제17조의	

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 의2,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제 47조, 제48조, 제48조의3 및 제49 조부터 제5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산업단 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지역"으로, "산 업단지의 지정 · 고시"는 "산업 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 획승인의 고시"로, "개발계획" 은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제33조(시설 부담) ① 실시계획승 | 제33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실시 인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 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등의 비 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 의 범위에서 제30조에 따른 존 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

제32조, 제33조, 제36조

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에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 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녹지를 보존하 게 할 수 있다.

담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은 시설부담금 단가[기반시설 표준 시설비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에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을 준용한다), 용도별 가중치 등을 곱하여 산정한다]에 존치하는 부지 면적을 곱하여산정한다. 이 경우 용도별 가중치 등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시 설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제2 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면제한 다.

⑤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이의신청 등) ① 제33조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자 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

<삭 제>

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 에게 이의신청사유 및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 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 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5조(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 <삭 제> 및 납부 등) ① 제33조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시설 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1개월 로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 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시설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 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시설부담금을 내 지 아니하면 시설부담금의 100 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 과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체납된 시설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시설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납부 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 된 기한까지 시설부담금과 가산

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 5항에 따른 시설부담금과 가산 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의5(지방이전기업 전용 산 제 업단지) ①·② (생 략)

③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 개발에 관하여는 제7조, 제7조 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8조,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3조까 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 조의4, 제16조, 제18조, 제18조 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u>제34조</u> 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 제47조부터 제52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세38소의	리5(시	방이	선기	급 선	. 용	산
업단기	ব) ①	• 2	(현호	행과	같음)
3						
				<u>-</u>	제33	<u>조</u>
					•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 용) ①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9 (1) -----배치나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 ·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 하여 포괄적인 계획에 따른 체 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개발 사업과 기반시설조성사업(이하 "특수지역개발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의4,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 의4,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7 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0 조의2,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 제33조--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9조 의2부터 제39조의11까지, 제39 조의14부터 제39조의17까지, 제 39조의19부터 제39조의21까지,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 제47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6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용지 면적은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25 이 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9조의10(재생사업에의 준용) 제39조의10(재생사업에의 준용) ① 재생사업에 관하여는 제5조, (1)

제12조(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 가 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만 준용한다), 제 13조, 제16조, 제16조의2, 제20 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항은 제외한다), 제23조부 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 조까지, 제45조, 제46조 및 제46 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 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재생계 획"으로 보고, "산업단지지정권 자" 및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각각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 로 보며, "산업단지개발실시계 획"은 "재생시행계획"으로 보 고, 제23조제1항 중 "제6조, 제7 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또는 제8조"는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으로 본다.

②·③ (생 략)

제48조(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u>제33조</u>
· ②·③ (현행과 같음)
]] 1]48조(감독) ①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改築)·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다목에서 자목까 지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각 각 포함한다)

가. ~ 라. (생 략)

마. <u>제33조제1항</u>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바. ~ 차. (생 략)

2. · 3. (생략)

②·③ (생 략)

1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제33조</u>
바. ~ 차.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